의사 본인진료 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청구방법

Q: **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찰하거나 투약, 치료하는 등 본인진료 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요, 의사 본인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기관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가요?**

A: 개원의 본인에 대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검사기관(수탁기관)으로 검사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급여가 타당합니다. 다만, 의사 본인 진료 시 위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기관(수탁기관)으로 지불한 검사료만 인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(10%)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한 검사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.

[관련근거]

의료인 본인진료시 급여 제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문 통보

개원의 본인의 검사를 검사기관(수탁기관)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검사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의료보험 급여가 타당함

⊙ 행정해석, 급여65720-10209호(2000.05.30)

[자료출처]: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(2012.10)_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
[자료제공]: 하나닥터스넷(주)